

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[별표 5] <개정 2024. 4. 23.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64조제2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 법조문        | 과태료 금액 |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1차 위반  | 2차 위반 | 3차 이상 위반 |
| 가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출입·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| 법 제60조제2항 제1호 | 300    |       |          |
| 나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0조제2항 제2호 | 100    | 200   | 300      |
| 다. 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0조제2항 제7호 | 100    | 200   | 300      |
| 라. 삭제 <2024. 4. 23.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마. 법 제4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 | 법 제60조제2항 제5호 | 300 |     |     |
| 바.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·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| 법 제60조제2항 제6호 | 300 |     |     |
| 사. 법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0조제2항 제8호 | 300 |     |     |
| 아. 법 제5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| 법 제60조제2항 제9호 | 300 |     |     |
| 자.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0조제2항 제3호 | 100 | 200 | 300 |
| 차.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0조제2항 제4호 | 300 |     |     |